

■ 정책 동향 ■

법령해석 ·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

심희정 변호사 | 유정한 변호사

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을 개정하여 해당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.

1. 주요 내용

개정된 규칙에서는 우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(비금융 상장회사, 금융상품 판매자)로 확대하였습니다. 또한 금융업 협회,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“대신하여”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는데, 금번 개정으로 협회 등이 그 회원을 “대신하여”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울러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공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고, 조건부 답변(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답변)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,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.

상기와 같이 개정된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은 고시 후 바로 시행되었고, 금융위원회는 2015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를 모아 업권별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.

2. 다운로드: 「[법령해석 ·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 - 신청은 더 쉬워지고, 혜택은 더 널리 공유됩니다.](#)」
[보도자료](#)